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0. 12. 16

시민도시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1. 28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0. 11. 28.
- 다. 상정일자 :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위원회(2000. 12. 16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정원배 도시개발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2000년 7월 1일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(법률 제6252호)의 관련규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와 더불어 시행된 현행 도시개발법(법률 제6242호)의 관련 규정으로 정비하고,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 중 분양지를 지정받지 못하거나, 분양지를 희망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.  
(안 제13조)
- 도시개발법 시행과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으로 정비함.(안 제20조, 제21조 및 제2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 조례(안)은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 중 분양지를 지정받지 못하거나, 분양지를 회망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주택특별 공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,
- 종합적·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토지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통합·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도시개발 법이 제정(2000. 1. 28 법률 제6242호)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도시개발법 관련규정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- 2000년 11월 20일 "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 자침" (재개 58554-3307)이 시달되어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,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던 것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제16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 음

5. 토론요지: 수정(안) 가결할 것을 동의

6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타사항: 없 음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(안)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0. 12. 16.  
제 안 자 : 시민도시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동 조례(안)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- 조례 제16조 중 "관할동장(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)"은 "구청장"으로 함.
- 부칙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"는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6조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"로 함.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(안)중  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 제16조 중 "관활동장(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)"은 "구청장"으로 한다.

부칙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"는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 
시행하되, 제16조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"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6조(종전 토지등의 소유권)         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 물 종          전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          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          기부에 의하며, 무허가건축물          인 경우에는 관할동장(도화제1  <u>동장과 학정동장은 제외</u>)이 발          행한 무허가건을 확인원에 의한          다.</p>	<p>제16조         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6조(종전 토지등의 소유권)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  <u>구청장</u>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          _____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<u>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       하되, 제16조 개정규정은 2001          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2000년 7월 1일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(법률 제6,252호)의 관련규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와 더불어 시행된 현행 도시개발법(법률 제6,242호)의 관련규정으로 정비하고,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### 2. 주요 개정골자

- 가.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중 분양지를 지정받지 못하거나, 분양지를 회망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 (안 제13조)
- 나. 도시개발법 시행과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도시개발법 관련규정으로 정비함 (안 제20조, 제21조 및 제23조)

### 3. 개정근거

- 가. 도시개발법(2000.01.28. 법률 제6242호) 제27조,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부칙 제3조
- 나. 도시개발법시행령(2000.08.02 대통령령 제16933호) 제49조, 제52조 및 부칙 제5조
- 다. 도시개발법시행규칙(2000.08.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) 제21조 및 부칙 제3항

### 4. 조례안 : 별첨

**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**

**6. 기타사항**

- 가. 입법예고(2000.10.16~2000.11. 5) 결과, 특기할 사항없음
- 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0.11.10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### **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(안)**

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**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**

제13조제4항중 “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시영아파트특별분양지침”을 “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중 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”를 “도시개발법 제27조 및 제29조 내지 제32조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및 제23조중 “토지구획정리사업법”을 각각 “도시개발법”으로 한다.

##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저축토지등의 조치) ① ~ ③(생략)      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에 대하여는 <u>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</u>에 따른다.          ⑤(생략)</p> <p>제20조(환지계획의 기준) ① (생략)          ②<u>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</u>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제21조(감보율 적용) ①관리처분계획시의 감보율계산은 <u>토지구획정리사업법</u> 관련 규정에 의한다.          ② ~ ④(생략)</p> <p>제23조(체비지등의 관리처분) 사업경비에 충당할 체비지 및 보류지등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<u>토지구획정리사업법</u>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13조(저축토지등의 조치) ① ~ ③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④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른다.          ⑤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환지계획의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<u>도시개발법 제27조 및 제29조 내지 제32조</u>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감보율 적용) ①-----          -----<u>도시개발법</u>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②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체비지등의 관리처분)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u>도시개발법</u>-----          -----</p>